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1074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김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명근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변론 종결 2024. 10. 29.

판결 선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3. 3. 23. 접수 제1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3. 9.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중소기업자금대출 39,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원금 31,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3. 9.부터 2018. 3. 8.로 정하여 보증하되,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C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2017. 3. 10.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3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은 2021. 9. 3.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C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 2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원금 1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1. 9. 3.부터 2026. 9. 2.로 정하여 보증하되,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C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은 2021. 9.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출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은 2023. 3. 3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및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을 대위하여 2023. 8. 29. 중소기업은행에 31,645,317원을, 2023. 9. 1. D은행에 19,536,424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0.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3. 11. 23.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C는 2023. 3. 2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C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406,584,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3. 3. 23. 접수 제1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영채

별지